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추가 등〉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2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추가 등	3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20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 차관들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두고 노·사·공 동수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안건을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 및 인권보호 정책에 관해서 노사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보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 강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동수의 노·사·공 대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Ⅲ. 검토의견

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에 관한 사항 추가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설치목적인 심의·의결 주요 사항을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로 변경하고, 각 호에서 규정된 구체적인 심의·의결사항에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규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구성된 현행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동수의 근로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 <u>권익보호</u> ----- --.

② (생략)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③ (생략)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u>위원은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u> ⑤·⑥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u>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동수의 근로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한다.</u> ⑤·⑥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제4조제1항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설치목적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 따라서 개정안 제4조제2항은 시행령 제3조제4호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법률상 좀더 강조하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설치목적인 심의·의결 주요 사항을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로 변경하는 개정안 제4조제1항의 경우 단어가 포괄하는 범위가 제한되어 오히려 심의·의결 주요 사항의 범위가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의 의사결정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

1)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를 대표하는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면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까지 포함된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보고하고 있고,²⁾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수반되는 출입국 및 체류기간에 관한 사항(외교부, 법무부), 외국인근로자가 도입되어야 하는 업종 및 인력 규모에 관한 사항(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송출국 지정 및 지정 취소 관련사항(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등 여러 부처와 연계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

2)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근로자위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2. 사용자위원: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공익위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정부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정부위원의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의견을 개진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국무조정실장을³⁾ 위원장으로 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유사하게 동수의 근로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제4조제4항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설치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국무조정실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다 부처간의 이해 및 정책 조정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 관계부처차관을 위원으로 하고, 각 부처는 소관 정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므로 다양한 부처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간 원활한 정책 조정 및 협의를 위해 현행 중앙행정기관 중심 위원 체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제4조제1항의 “보호”는 “권익보호” 및 “신체적·물리적 보호”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은 낮아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현행 법령상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안건은 ‘고용부차관이 위원장이고 노사단체 대표가 동수로 참석’하는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논의를

3)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노사단체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반드시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논의된 사안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보고되어 의결시 반영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4조제4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5

참고 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

- ☐ (구성) 「외국인고용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
- 또한 위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 심의하기 위해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설치

구성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
위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 근로자위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추천자) ■ 사용자위원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 추천자) ■ 공익위원 (외국인근로자 관련 학식·경험 풍부한 자) ■ 정부위원(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 ☐ (운영) 연중 수시로 필요에 따라 개최하되, 사전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논의를 거침
- ☐ (역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도입업종·규모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외국인고용법 제4조제2항)〉

- ①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③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송출국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규모, 송출국가별 외국인력 도입업종 및 규모,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참고 2

외국인 관련 위원회 현황

구분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30인 이내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
위원장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위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장위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장위촉)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실무위원회	위원장 1인 포함 30인 이내	위원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장 1인 포함 25인 이내
위원장	법무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위원	①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②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①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① 동수의 노·사 대표 위원 ② 공익위원, ③ 정부위원
법적 근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8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	외국인고용법 제4조
주요 목적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개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 및 관리
주요 기능: 심의 및 조정	· 외국인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 외국인 정책의 시행계획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 ·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등 적응 · 주요 외국인 정책심의·의결	·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다문화가족 관련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 다문화가족 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 · 주요 다문화가족 정책심의·의결	·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 수립 ·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및 규모 등 결정 ·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주요 외국인력 정책 심의·의결
주요 대상	재한외국인 + 국적취득자 (3년 이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혼인구혼자 또는 그 자녀(24세 이하 아동·청소년)로 이루어진 가족	외국인근로자: 국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외국인